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13일, 위성곤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7.) 상정,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위성곤 의원)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문상)

개정안은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명칭을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광주센터와 제주센터가 동격의 법인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에 설립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필요한 경우 분원 설치·지정·운영 가능 및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 가능	좌동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 으로 정함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u>정관</u> 으로 정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경우 기타 법인보다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원의 설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현행 유지의 필요성 및 개정에 따른 법인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분원설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해당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동법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정관으로 분원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정관으로 분원 설치 등이 가능한 입법례>

법률	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 ¹⁾	한국디자인진흥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²⁾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³⁾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⁴⁾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치유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기존의 사유 외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치유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원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결격사유가 다소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에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단체 등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이하 생략)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학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分院(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관련 비교>

	현행	개정안
운영재원 (제17조)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u>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u> 3. 그 밖의 수입금
출연·기부 가능 (제18조)	신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 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 및 기부 가능

참고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세분화 및 그 방법에 대해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개정안은 동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

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국립시설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현행법에서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립시설인 치유센터는 국가가 그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서 치유센터의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⁶⁾

현행법 제18조는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보조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지방자치법」 제137조⁷⁾제3항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

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립시설인 치유센터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 근거를 삭제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한편,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출연·보조를 의무화하려는 바, 이를 통해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치유센터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출연금에 한하여 지역 특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국립시설에 대한 국가의 출연 의무화와 관련한 입법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⁹⁾ 재정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여 법제원칙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은 재량규정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